

의안번호	제75호
의결연월일	2017. 9. 25.

##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8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25일,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#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친환경기술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농기계 임대인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의무화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,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‘농업인 안전공제’ 가입 농업인에 한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 조건을 변경함(안 제9조제1항)
- “임차료”를 “임대료”로 변경 별지 서식에 맞게 용어를 통일함(안 제12조제2항)
-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(안 제20조제5항 · 제6항)
  - 당연직위원 : 농업기계업무 소관 과장, 농업관련 단체의 대표자 (농촌지도자, 논산시연합회, 한국생활개선논산시연합회, (사)한국여성농업인논산시연합회)
  - 위촉직위원 : 농업관련 유관기관 대표자, 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○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변경함(안 제21조제1항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**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